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여수광양항만공사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 목 차 -

## 【 제 · 개정이력 】

### I. 일반 사항

1. 목 적	1
2. 적용 범위	1
3. 관련 법규	1
4. 용어 정의	2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6
2. 전개 양상	6
3. 위기관리 체계	7
가. 종합체계도	7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8
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체계	9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12
마. 재난현장 대응 · 수습 표준체계	13

###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16
2. 방 침	16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 고려 요소	17

4. 위기징후 감시 .....	18
가. 위기징후 목록 .....	18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8
5. 위기 평가 .....	19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19
가. 위기경보 수준 .....	19
나. 위기경보 절차 .....	20
다. 해양수산부 위기경보 발령 체계 .....	21
7. 비상근무체계 .....	23
가.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23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력 파견 .....	23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해양환경 분야>

1. 관심	
가. 상황 .....	25
나. 조치사항 .....	25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26
2. 주의	
가. 상황 .....	27
나. 조치사항 .....	27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28
3. 경계	
가. 상황 .....	29
나. 조치사항 .....	29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30

4. 심각	
가. 상황 .....	31
나. 조치사항 .....	31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32

<항만·선박 분야>

1. 관심	
가. 상황 .....	33
나. 조치사항 .....	33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34
2. 주의	
가. 상황 .....	35
나. 조치사항 .....	35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37
3. 경계	
가. 상황 .....	38
나. 조치사항 .....	38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40
4. 심각	
가. 상황 .....	41
나. 조치사항 .....	41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43

## <수산 분야>

### 1. 관심

가. 상황 .....	44
나. 조치사항 .....	44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45

### 2. 주의

가. 상황 .....	46
나. 조치사항 .....	46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47

### 3. 경계

가. 상황 .....	48
나. 조치사항 .....	48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50

### 4. 심각

가. 상황 .....	51
나. 조치사항 .....	51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53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발생상황 I

가. 상황 .....	55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55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58

2. 발생상황 II	
가. 상황 .....	59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59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61

## VI. 기관대응수칙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65
2.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	66
3.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 부서별 협업기능 .....	67
4. 여수청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대응 주요 협업기능 .....	68
5.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 관계기관 주요 임무 .....	69
6. 방사능 재난 대응 비상연락망 .....	70

## VII. 부 록

1. 상황보고서 .....	76
2.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보고서 .....	77
3. 위기관리 전파체계 .....	78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86
5.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 .....	99
6. 원전 사고·고장 등급에 따른 사고 분류 및 분석 .....	101
7. 국외 사고사례 .....	102
8.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103
9. 원자력시설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105
10. 인접국 원전 운영 현황 .....	107
11.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공유 체계 .....	108

## 제 · 개 정 이 력 서

제 목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분	날짜	주요내용	담당부서
제정	2016.06.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신규 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제정(작성 대상기관 신규 지정)	물류기획실 송찬욱
개정	2018.04.10.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기대응표준매뉴얼 개정 및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신규 개정 내용 반영(표준매뉴얼 긴급대응체계 개정 반영)	항만운영팀 정하수
개정	2019.09.30.	○ 조직개편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개정	2020.08.21.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안전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개정	2022.04.08.	○ 조직개편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재난안전실 나승주



# I . 일반사항

# I .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은 인접국가 원자력시설에서의 대규모 방사능누출 사고 또는 대규모 방사능오염 사고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할 경우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

## 2 적용 범위

인접국가 원자력시설에서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 또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 사고에 따른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의 위기 대응 활동에 적용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시 해양수산부 위기대응활동

- 방사능오염 대응관련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대응 활동에 대한 지원·협조 업무
- 항만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인원·화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 업무
- 수산물 및 전국 연·근해 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오염 감시 및 검사(지원 업무 포함)업무
- 방사능오염 우려 해역에 대한 어업활동 및 수산물 출하·운반, 선박 운항에 관한 업무
-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항해하거나 기항했던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관리 및 오염 검사에 관한 업무

### 3 관련 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다. 「원자력안전법」
-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바. 「해양환경관리법」
- 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아. 「식품위생법」
- 자. 「식품안전기본법」
- 차. 「먹는물 관리법」
- 카.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IAEA)」
- 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파.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국가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위기관리 주관기관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위기관리 유관기관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구 분	내 용
위기관리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재 난 관 리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li> <li>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li>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li> </ul>
비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li> <li>•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li> </ul>
결과 수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li> </ul>
완만 진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li> </ul>
순간 증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 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li> </ul>
위 기 경 보 수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li> <li>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li> <li>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li> <li>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li> </ul>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구 분	내 용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Ci(큐리) = 3.7E10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방사능농도 또는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
인접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대만 등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성누출 사고 발생 시 국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방사능오염	공기, 물, 토양, 식품, 건물 또는 인체를 포함한 물체의 표면 또는 내부에 방사성핵종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함유되는 것
체외오염	사람의 피부,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먼지, 분말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방사능오염
체내오염	사람이 방사성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방사성물질이 상처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됨으로써 일어나는 체내 장기나 조직의 방사능오염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Ⅱ. 위기 형태와 관리체계

### 1 위기 형태

- 가.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오염자의 입국 및 오염물품의 수입 가능성 발생
- 나. 인접국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국내 대기, 토양, 식품 등의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다. 국내 수출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낙인 가능성 발생
- 라. 기타 위기형태에 준하는 위기형태

### 2 전개 양상

- 인접국가 원자력 시설 사고 발생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악화
- 인접국가 대규모 방사능오염 발생



-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오염자의 입국 및 오염물품의 수입 가능성 발생
- 인접국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국내 대기, 토양, 식품 등의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국내 수출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낙인 가능성 발생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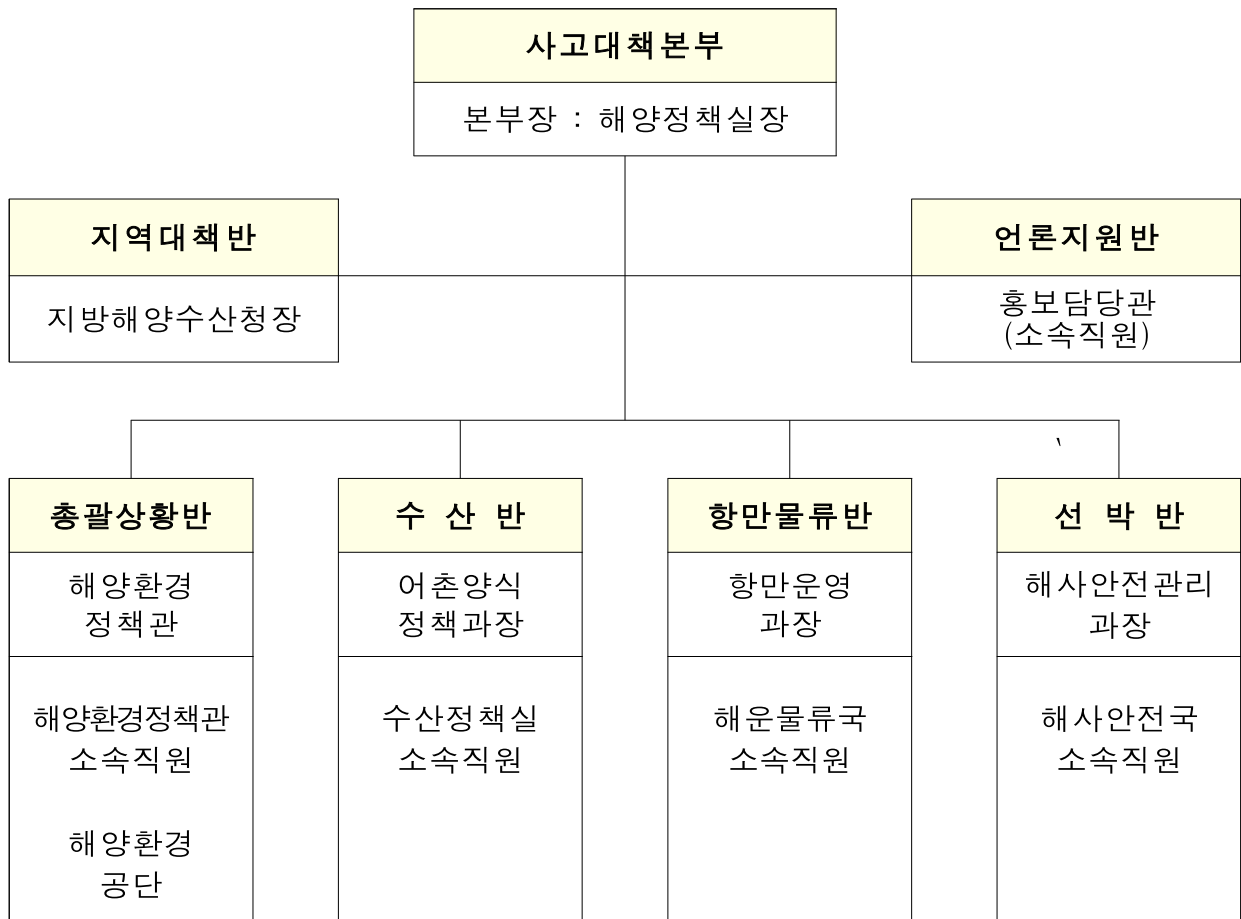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기 능
<b>국 가 안 보 실</b> <b>(국가위기관리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b>대통령비서실</b> <b>(소관비서관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b>중앙안전관리 위원회</b> <b>(국무조정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ul>
<b>중앙재난안전</b> <b>대책본부</b> <b>(행정안전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 요청</li> <li>- 인접국사고대응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li> <li>-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li> </ul> </li> <li>○ 국민보호조치 이행, 지자체 대응활동 총괄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계획 점검·조정</li> <li>- 구호소, 대피소 등 지정·운영 감독 등</li> </ul> </li> </ul>
<b>인접국사고대응본부</b> <b>-원자력안전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후 및 상황 정보 수집·전파</li> <li>- 원자력 사고분석 및 정보 제공</li> <li>-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li> <li>- 오염검사·제염·피폭관리 등 유관부처 대응활동 지원</li> <li>- 국내 환경방사선(능) 감시 및 방사선영향평가 등</li> <li>- 국민보호조치 범위 및 방법 검토</li> </ul> </li> <li>○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li> <li>○ 언론대응 및 유언비어 대처 등 대국민 정보제공</li> <li>○ 재난문자 발송요청, SNS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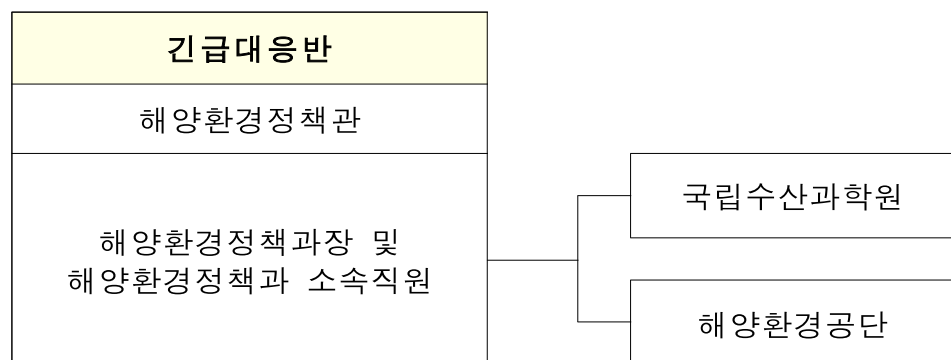
## 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체계

### ○ 사고대책본부 조직체계



\* 사고대책본부의 기관 대응체계, 조직·인원구성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긴급대응반 조직체계



\* 상황에 따라 긴급대응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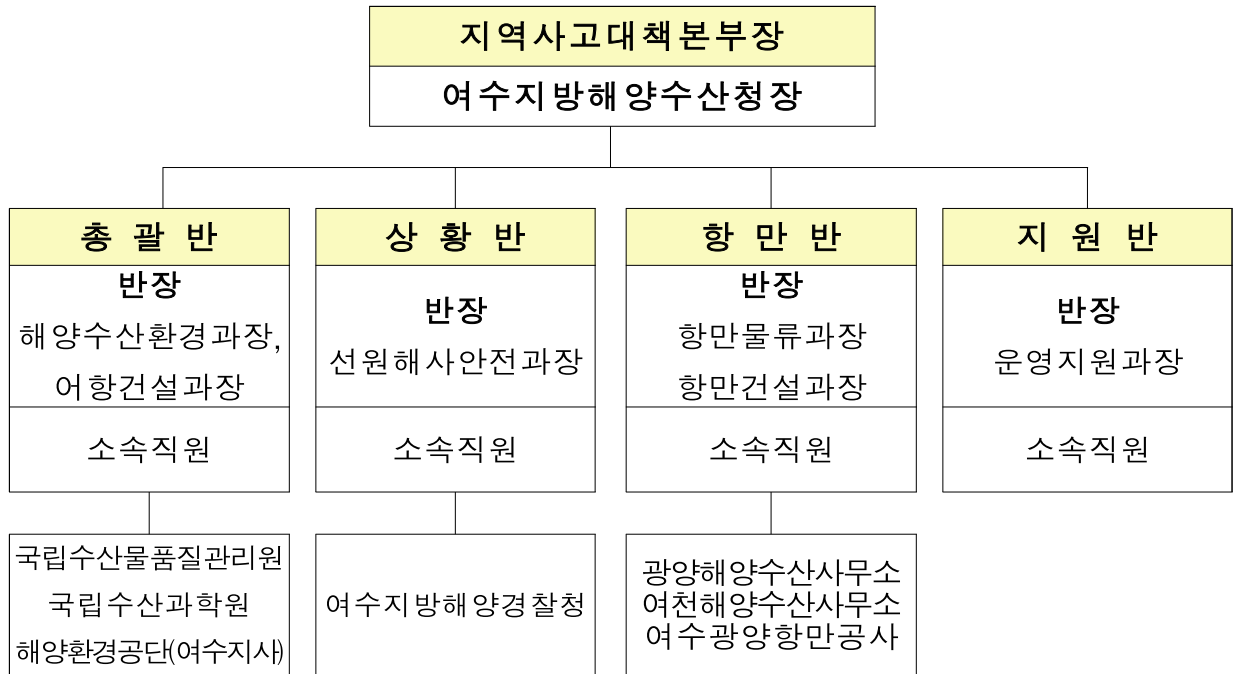
○ 사고대책본부 반별 임무

반명	소속	근무자 편성	임무
총괄상황반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정책실 소속 직원	대내·외 상황 접수·전파 및 보고, 해양환경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수산반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수산정책실 소속 직원	유통 전 수산물 안전검사 등 수산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항만물류반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해운물류국 소속 직원	입·출항 선박 통제 등 항만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선박반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	선박안전분야 단계별 조치·대응 및 선박 평형수 검사 지원 총괄
언론지원반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대변인실 소속 직원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보도 자료 배포 등
대책반	소속·산하기관	소속·산하기관 직원	현장 상황파악·보고 및 단계별 대응 조치

○ 긴급대응반 임무

반명	소속	근무자 편성	임무
긴급대응반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상황 접수·전파 및 보고,</li> <li>● 상황판단 및 초등대응 총괄</li> <li>● 해양환경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li> </ul>

○ 지역사고대책본부 조직체계



\* 대응조직, 인원구성 등은 사고 및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사고대책본부 위기대응반 별 임무

구분	구성	임무
총괄반	반장 : 해양수산환경과장, 어항건설과장 반원 : 소속직원	○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위기대응상황 종합보고 ○ 각 반별 활동 및 조치사항 정리·보고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출하금지조치 ○ 해양방사능오염 조사·지원
상황반	반장 : 선원해사안전과장 반원 : 소속직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총괄 ○ 선박 관련 분야 단계별 조치 및 대응 - 사고해역 주변 선박 운항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행동요령 전파 - 오염해역 항행 선박의 선박평형수 검사
항만반	반장 :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반원 : 소속직원 지원 : 광양해양수산사무소, 여천해양수산사무소, 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분야 단계별 조치 및 대응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만시설 방호조치 및 선박 ·승객·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활동 지원 - 오염선박 항만 입출항 관리 지원
지원반	반장 : 운영지원과장 반원 : 소속직원	○ 대책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 긴급인력·장비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지원 ○ 사고대응 소요 인력 및 기자재 지원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구분	임무	담당기관
① 상황관리 총괄	가)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나) 관계부처, 지방청 등 비상연락망 유지 다)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라)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마) 위기경보 발령·전파 및 경보단계 조정·해제 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원인력 파견 총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양환경정책과
⑥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가) 사고수습을 위한 민관군 장비·인력 등 재난대응 자원관리 총괄·배분 - 방사능 측정장비, - 조사 및 대피·이동용 선박 - 방사능 전문 인력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산업기술과
⑦ 교통대책반	가) 인근 해역 선박운항상황 파악 나) 항행안전 경보방송 실시 다) 방사능오염 우심선박 항만 입출항 관리 지원 라) 항만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 요청·지원	연안해운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산업기술과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주변해역 및 해양생물 방사능오염 조사 나) 방사능 관련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출하 제한 다) 항만 입출항 선박·인원·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라)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여부 검사·지원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으로 표준화



###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 현장대응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 지휘
-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 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국내 환경 감시 강화 등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대국민 홍보
- 나. 인접국가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시 주관기관의 환경방사능 조사 지원 및 위기 수준별 대응활동을 통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의 환경 보전

### 2 방 침

- 가. 주관기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상호 협력·대응 체계 구축·운영
  - 1) 대응기관간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공유 체계 확립
  - 2)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 인접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나. 국내 미치는 방사선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대응활동 전개
  - 1)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정확한 평가·예측
  - 2) 국내 유관기관간 일관된 대응체계 전개
- 다. 신속·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안심 제공
  - 1) 신속한 환경감시 및 정확한 정보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 2)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등의 방지

### 3

##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대응개념

#### 1)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 가) 목표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국내 환경 감시 강화 등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대국민 홍보
- 인접국가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시 주관기관의 환경방사능 조사 지원 및 위기 수준별 대응활동을 통한 해양수산부 관할 해역의 환경 보전

##### 나) 대응방향

- 유관기관간 긴밀 협조체계 가동
- 환경감시 확대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국민보호조치 의사결정
- 신속한 국민보호조치 수행을 통해 피해 최소화

### 나. 대응지침

#### 1)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 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실행

##### 나) 신속한 상황전파 및 사고 진행상황 주시

-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유관기관, 방송사 등

##### 다) 재난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 실시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추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자원동원 협조체계 가동

### 다. 판단·고려 요소

#### 1)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 가) 방사능누출 사고의 규모 등 방사성 물질 등의 누출 정도

##### 나) 풍향, 풍속, 해류의 흐름 등 기상 및 해상 상황

## 4 위기징후 감시

###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징후 (3개)	감시수단 (5개)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대비·대응)
1.1.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	○ 한·중·일 3국 간 비상연락망	○ 한·중·일 3국 간 비상연락망 유지(이메일 등)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	○ (평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 (관심단계) 상황분석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 (주의단계) 상황관리 반 발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언론, 방송, 인터넷	○ 언론 등 모니터링		
1.2.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이후 대기로 유입	○ 국가 환경방사선/능 감시망	○ 전국 환경방사선 준위 모니터링 *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방사성물질 국 내유입 정도에 따라 경계~심각 단계 경보 발령	○ (경계단계) 방사능 중앙통제상황실 발족 ○ (심각단계) 인접국 사고대응본부 발족, 국민보호조치 필요성 검토·요청
1.3.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이후 해수로 유입	○ 표층해수 방사능농도 감시	○ 표층해수 시료를 통한 방사능농도 분석	- (경계)인접국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이 1mSv 초과할 경우	
	○ 수심별해수 방사능농도 감시	○ 수심별해수 시료를 통한 방사능농도 분석	- (심각)인접국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운용기관 : 원안위 방재환경과)

- 1) 위기징후 목록에 따른 감시수단과 감시방법 등 징후감시체계를 구축
  - 감시수단이 통계인 경우 통계 생산·관리 체제 마련
  - 타 기관·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체계를 구축
- 2) 위기징후를 징후감시체계를 통해 감시하고, 징후 포착시 그 정보를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공유
- 3) 위기징후 감시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공유전파

## 5 위기 평가

- 1)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 · 시급성 · 확대가능성 · 전개속도 · 지속 시간 · 국내외여론 등을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 2) 주관기관은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 운영
- 3)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위기징후 감시 ·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li> </ul> </li> <li>※ INES :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3등급 이하 : 고장, 4~7등급 : 사고)</li> </ul>	사고 징후 감시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li> </ul>	환경 감시 강화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 방사성물질 누출 정도, 기류분석 등</li> </ul> </li> <li>※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시</li> </ul>	경계경보 발령, 환경감시 강화, 행동요령 홍보 등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방재법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동 시행규칙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항 별표 4(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li> <li>-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기준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li> </ul> </li> </ul>	심각경보 발령, 국민보호조치 이행 등

## 나. 위기경보 절차

- 1)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각 부서 및 관련 업·단체 등에 전파
  -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상황과악 및 위기평가, 대응수준 결정 등의 조치 시행·전파
- 2)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주관기관(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경보 발령 전이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 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주관기관(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

## 다. 해양수산부 위기경보 발령 체계

### 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경보 및 협조 요청사항 등 접수  
(해양환경정책과 주관, 종합상황실 협조)
- 위기경보 접수부서는 위기경보를 ‘SNS 등’을 통해 부 내에 전파하고, 주요 위기상황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조요청 사항 등을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파·공유

### 2) 위기경보 전파

- ‘SNS 등’을 통한 전파
  - (방법) 관련부서 소속 직원 대상 위기경보 전파(종합상황실 협조)
  - (내용) 위기수준 및 위기상황 개요 등
- 장·차관 및 관련 실·국장에게 위기수준, 위기상황, 조치방향 등 보고

### 3) 상황판단회의

- (요건)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 \* 위기단계를 「경계」 이상으로 발령한 경우 상황판단회의 생략 가능
- (구성) 해양정책실장(주재), 실무반장, 관련 부서장 등
  -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상황에 따라 유선·SNS 등으로 대체 가능
- (역할) 위기상황 및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협조 요청사항 검토 및 우리부 대응 수준 결정

위기경보 발령체계



## 7 비상근무체계

### 가.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비상단계	근무기준	근무편성	인원
관심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반(3명)</li> <li>- 해양환경정책과 3</li> <li>※ 상황에 따라 상황반 추가편성</li> </ul>	3명
주의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반(7명)</li> <li>- 해양환경 3, 해사안전 1, 어촌양식 1, 항만운영 1, 해사산업 1</li> <li>※ 상황에 따라 사고대책본부 전환</li> </ul>	7명
경계	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유의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책본부(16명+α)</li> <li>- (본부)총괄상황 4, 수산 3, 항만물류 3, 선박 3, 언론지원 3</li> <li>- (지역) 지방청·소속·산하기관</li> </ul>	16명
심각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책본부(20명+α)</li> <li>- (본부)총괄상황 5, 수산 4, 항만물류 4, 선박 4, 언론지원 4</li> <li>- (지역) 지방청·소속·산하기관</li> </ul>	20명

\* 위기상황 등에 따라 근무인원 및 지역대책본부 구성 등은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력 파견

1) (파견시기)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주관기관 또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요청 시

2) (파견인원) 주무관급 1명 / 1인 24시간 근무

\* 최초 파견은 어촌양식정책관(중앙), 해양수산환경과(현장 관할 지방청) 소속 직원, 이후 근무교대는 우리부 재난대응 인력 파견 절차에 따라 각 실·국별로 선정

3) (주요임무) 부처별 재난수습상황 및 지원협력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수습상황,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수습상황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입수, 피해현황·조치상황 파악 보고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수습상황 파악 보고 및 조치사항 전파 등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 해양환경 분야 》

#### 1 관심

##### 가. 상황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INES 4~5등급)  
 -인접국가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보 접수</li> <li>- 【위기경보 : 관심(Blue)】</li> <li>○ 분야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방사능오염 조사·검사지원 체계 점검</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의 방사능 조사·검사 현황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책 상황실·대책반 설치·운영 준비</li> <li>○ 원안위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지원체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관심(Blue)】 수준
- 전파(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준비(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방사능오염조사검사 지원을 위한 조사단 구성 및 조사계획 수립, 조사 검사지원 준비 실태 보고(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해양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관심) 접수 및 전파</li> <li>●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준비</li> </ul>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오염조사·검사 지원을 위한 조사단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조사·검사지원 준비 실태 보고</li> </ul>

## 2 주의

### 가. 상황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INES 6~7등급)  
-방사성물질 대규모 환경 누출 확인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보 접수</li> <li>- 【위기경보 : 주의(Yellow)】</li> <li>○ 분야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방사능오염 조사·검사지원 체계 운영</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의 방사능 조사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반 설치·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주의(Yellow)】 수준
- 전파(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
  - 긴급대응반 편성·운영, 사고경위 파악 및 주관기관 업무 협조 유지
- 해양방사능조사·검사지원 협조체계 유지(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국립수산과학원 : 원안위의 시료 채취 지원 준비
  - 해양환경공단 : 주요 해역 방사능 검사(시료 채취·분석)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해양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주의) 접수 및 전파</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긴급대응반 편성·운영)</li> <li>●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시료채취 지원 준비</li> </ul>
해양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해역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li> </ul>

### 3 경계

#### 가. 상황

□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 시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 내용	관계 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보 접수</li> <li>- 【위기경보 : 경계(Orange)】</li> <li>○ 분야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비점검 및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해양방사능 조사·검사 시행 및 지원·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경계(Orange)】 수준
- 전파(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고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해양환경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
-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
  - 사고경위 파악 및 주관기관 업무 협조
- 해양방사능 조사·검사 시행 및 지원·협조(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국립수산과학원 : 원안위의 시료 채취 지원(요청시)
  - 해양환경공단 : 연안해역 방사능 검사(시료 채취·분석)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해양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경계) 접수 및 전파</li> <li>● 해양환경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시행 및 지원·협조</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시료채취 지원 준비(요청시)</li> </ul>
해양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해역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li> </ul>

## 4 심각

### 가. 상황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사능방재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보 접수</li> <li>- 【위기경보 : 심각(Red)】</li> <li>○ 분야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대비점검 및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해양방사능 조사·검사 시행 및 지원·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li> <li>○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li> </ul>
보고·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심각(Red)】 수준
- 전파(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
  - 범정부적 자원 동원에 따른 우리부 협조사항 적극 지원
-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
  - 사고경위 파악 및 주관기관 업무 협조
- 해양방사능 조사검사 시행 및 지원·협조(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국립수산과학원 : 원안위의 시료 채취 지원(요청시)
  - 해양환경공단 : 연안해역 방사능 검사(시료 채취·분석)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해양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경계) 접수 및 전파</li> <li>● 범정부 대응체계가동 협조</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시행 및 지원·협조</li> </ul>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시료채취 지원 준비(요청시)</li> </ul>
해양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해역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li> </ul>

# 《 항만·선박 분야 》

## 1 관심

### 가. 상황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INES 4~5등급)
  - 인접국가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관심단계) 접수</li> <li>○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li> </ul>
대비점검 및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준비</li> <li>○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점검</li> <li>○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제 유지·점검</li> <li>○ 선박 운항감시체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li>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li> <li>○ 해운정책과</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관심(Blue)】**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준비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주관 : 해운정책과, 지원 :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YGPA·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주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계 유지 및 검사 지원사항 점검  
(국제여객터미널 주관 : 여수청선원해사안전과, 지원 : 해운정책과)  
(기타 항만시설 주관 : 여수청 항만물류과, 지원 : 항만운영과)
  - 검사장비 설치장소, 검사관 출입 등 필요한 행정조치, 검사관 임시대기 장소 점검 등(여수청 운영지원과·YGPA)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여수청 해양수산환경과·YGPA)
- 선박 운항감시체계 점검
  - 방사능 누출 항만의 국적선박 운항동향 파악 준비(주관 : 해운정책과)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관심)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해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준비</li> <li>● 선박 운항감시체계 점검</li> </ul>
여수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li> <li>●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계 유지 및 검사 지원사항 점검</li> </ul>

## 2 주의

### 가. 상황

<input type="checkbox"/>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INES 6~7등급) - 방사성물질 대규모 환경 누출 확인
---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주의단계) 접수</li> <li>○ 본부 관련부서, 지방청, YGPA 등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li> </ul>
대비점검 및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시행</li> <li>○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li> <li>○ 인력, 화물, 선박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협조체제 유지 및 검사지원</li> <li>○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li>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li> <li>○ 해운정책과, 항만운영과</li> <li>○ 해운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주의(Yellow)】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시행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실시  
(주관 : 해운정책과, 지원 :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YGPA·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 인력, 화물, 선박 등에 대한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제 유지 및 검사지원  
(국제여객터미널 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지원 : 해운정책과)  
(기타 항만시설 주관 : 여수청 항만물류과, 지원 : 항만운영과)
- 검사장비 설치장소 준비, 검사관 출입 등 필요한 행정조치 준비, 검사관 임시대기 장소 준비 등(여수청 운영지원과·YGPA)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여수청 해양수산환경과 · YGPA)

○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

- 방사능 누출 항만의 국적선박 동향 파악 및 운항 제한 결정  
(주관 : 해운정책과)
-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위한 검사대상선박 선정, 인력·장비 확보(주관 : 해사산업기술과, 지원 : 해양환경공단)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주의)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해운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시행</li> <li>•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li> </ul>
여수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li> <li>•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계 유지 및 검사 지원</li> </ul>

### 3 경계

#### 가. 상황

□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 시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 내용	관계 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경계단계) 접수</li> <li>○ 지방청, YGPA 등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li> </ul>
대비점검 및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li> <li>○ 인력, 화물, 선박 등에 대한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제 유지 및 검사지원</li> <li>○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제한 검토 등 필요 조치</li> <li>○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li>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li> <li>○ 해운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li> <li>○ 해운정책과, 해사안전관리과</li> <li>○ 해사안전관리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경계(Orange)】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강화  
(주관 : 해운정책과, 지원 :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YGPA·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오염검사 지원(주관 : 여수청 항만물류과 지원 : 항만운영과)
  - 항만 입출항 선박인원·화물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요청·지원
    - \* 검사장비 설치협조, 검사관 출입 등 행정조치, 검사관 임시대기 장소 제공 등  
(각 지방청·YGPA)
  -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주관 : 해사산업기술과, 지원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해양환경공단)



-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제한 검토 등 필요 조치(주관 : 해운정책과, 협조 : 해사안전관리과)
-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주관 : 해사안전관리과, 지원 : 여수청 운영지원과)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경계)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해사안전)</li> </ul>
해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제한 검토 등 필요 조치</li> </ul>
해사산업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li> </ul>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오염검사 지원</li> </ul>

# 4 심각

## 가. 상황

□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사능방재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심각단계) 접수</li> <li>○ 지방청, YGPA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                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li> </ul>
대비점검/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li> <li>○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오염검사 지원 확대</li> <li>○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강화</li> <li>○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li> <li>○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li>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등</li>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과</li> <li>○ 해운정책과</li> <li>○ 해사안전관리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li> </ul>
보고·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심각(Red)】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해양환경공단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
  - 범정부적 자원 동원에 따른 우리부 협조사항 적극 지원
-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강화(주관 : 해운정책과, 지원 :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YGPA·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오염검사 지원 확대(주관 : 여수청 항만물류과, 지원 : 항만운영과)
  - 항만 입출항 선박인원화물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요청지원
  - \* 검사인원 증원 및 검사장비 추가 설치에 따른 필요한 행정조치 강화

-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지원(주관 : 해사산업기술과, 지원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해양환경공단)
-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강화(주관 : 해운정책과)
-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주관 : 해사 안전관리과, 지원 : 여수청 운영지원과)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심각)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긴급 물자수송 및 인력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확보(해사안전)</li> <li>●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li> </ul>
해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강화</li> </ul>
해사산업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li> </ul>
여수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GPA,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오염검사 지원 확대</li> </ul>

# 《 수산 분야 》

## 1 관심

### 가. 상황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INES 4~5등급)  
 -인접국가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관심단계) 접수</li> <li>○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 식약처 등</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안전성 조사지원 체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수산반) 설치·운영 준비</li> <li>○ 수산물 방사능 조사 지원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관심(Blue)】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관련 시·도에 대응방향 지시
-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준비  
(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관심)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u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준비</li> </ul>

## 2 주의

### 가. 상황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INES 6~7등급)  
- 방사성물질 대규모 환경 누출 확인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주의단계) 접수</li> <li>○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 식약처 등</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안전성 조사·검사지원 체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반(수산반)·대책반 설치·운영 준비</li> <li>○ 수산물안전성 조사 지원 체계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li>- 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주의(Yellow)】 수준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관련 시·도에 대응방향 지시
- 필요시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 지원(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주의)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u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필요시)</li> </ul>



### 3 경계

#### 가. 상황

□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 시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 내용	관계 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경계단계) 접수</li> <li>○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li>※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li> <li>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 식약처 등</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상황반 운영</li> <li>○ 수산물안전성 검사지원</li> <li>○ 수산물출하 제한 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수산반)·대책반 설치·운영</li> <li>○ 수산물안전성 조사지원 체계가동</li> <li>○ 수산분야 사업장 지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조치내용 등</li> <li>- 현황 등 대응조치(압류, 폐기, 회수 등) 실시</li> <li>-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경계(Orange)】 수준
  -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관련 시·도에 대응방향 지시
-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기본정보 조사 파악
- 국내·외 오염해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업금지 조치(어업정책과, 원양산업과, 시도)
-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오염 수산물 출하 금지 조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경계)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li>•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기본정보 조사 파악</li> <li>•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오염 수산물 출하 금지 조치</li> </ul>
어업정책과 원양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오염해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업금지 조치</li> </u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준비</li> </ul>

## 4 심각

### 가. 상황

□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사능방재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위기경보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심각단계) 접수</li> <li>○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전파</li> </ul> ※ 경보접수 및 전파 체계 ①원안위→②해양환경정책과→③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④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 식약처 등</li> </ul>
대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상황반 운영 강화</li> <li>○ 수산물안전성 검사 지원</li> <li>○ 수산물출하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수산반)·대책반 설치·운영</li> <li>○ 수산물안전성 조사지원 체계 가동</li> <li>○ 수산분야 사업장 운영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li>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국립수산과학원</li> <li>○ 시·도</li> </ul>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및 대응 조치(압류, 폐기, 회수 등) 실시 현황 등</li> <li>-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 2) 조치내용

###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심각(Red)】 수준  
※ 원안위 발령 위기경보는 해양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에 전파
- 전파(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 대상 : 본부 관련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보 수준 및 우리부 조치사항

### 2 대응조치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관련 시·도에 대응방향 지시
-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강화  
(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
-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실시간 파악 및 제한
- 국내·외 오염해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업금지 조치(어업정책과, 원양산업과)
-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오염 수산물 출하 금지 조치(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심각)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수행</li>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li>●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실시간 파악 및 제한</li> <li>●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오염 수산물 출하 금지 조치</li> </ul>
어업정책과 원양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오염해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업금지 조치</li> </u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li> <li>●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오염 수산물 출하 금지 조치</li> </ul>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발생상황 |

### 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년 00월 00일, 00국 000지역 00원전 0호기가 냉각재 누설사고(INES 6~7등급)로 방사성물질 대량 누출 확인되어 주의단계 발령</li> </ul> </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li> <li>- 장소 : 00국 000지역 000원자력발전소 0호기</li> <li>- 사고개요 :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었으며, 원자로 냉각기 능상실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 발생 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li> <li>- 피해상황 : 00국 방사선피폭환자 00명</li> <li>- 기타 : 현 기상상황 : 맑음, 남동풍 1.6m/s</li> </ul> </li> </ul>
---

###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해양환경정책과(총괄) ○ 어촌양식정책과 ○ 항만운영과 ○ 해사안전관리과
(나) 초동조치	(나-1) 사건상황 모니터링 (나-2) 사고상황 전파 (나-4)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체계 점검·운영	○ 해양환경정책과 ○ 어촌양식정책과, 항만 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다) 대응조치	(다-1) 긴급대응반 설치 (다-2)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 (다-3) 해역 방사능오염 조사 (다-4) 수산물안전성 조사 지원·체계 가동	○ 해양환경정책과 ○ 어촌양식정책과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정책과, 지방청
(라) 후속조치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 해양환경정책과 ○ 해양환경공단, 수산과학원



## 2) 조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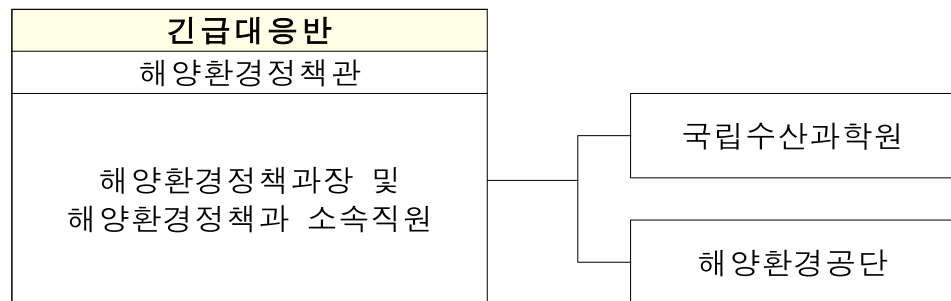
○ 상황보고 및 접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고상황 및 주의단계 위기경보 접수 후 본부 유관부서, 지방청 및 YGPA,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 전파

\* 전파내용 : 사고원인 및 상황, 경보수준(주의), 주요 현장대응조치 등

○ 긴급대응반 설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긴급대응반 구성 및 각 실무반 별 실무 담당자 지정
- 반장(해양환경정책관) 주관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통한 대응수준 결정



○ 대응조치(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 상황 모니터링 : 사고 상황 및 대응 조치, 오염 확산 여부 등 사고상황 모니터링(해양환경정책과)

### <항만선박분야>

○ 선박 및 항만시설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시행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실시(주관 : 해운정책과, 지원 :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YGPA·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 인력, 화물, 선박 등에 대한 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계 유지 및 검사지원  
(국제여객터미널 주관 :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지원 : 해운정책과)  
(기타 항만시설 주관 : 여수청 항만물류과, 지원 : 항만운영과)
- 검사장비 설치장소 준비, 검사관 출입 등 필요한 행정조치 준비, 검사관 임시대기 장소 준비 등(여수청 운영지원과·YGPA)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여수청 해양수산환경과·YGPA)

○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

- 방사능 누출 항만의 국적선박 동향 파악 및 운항 제한 결정 (해운정책과)
-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위한 검사대상선박 선정, 인력·장비 확보(주관 : 해사산업기술과, 지원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분야>

- 해양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준비 (주관 : 해양환경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 방사능오염조사·검사 지원을 위한 조사단 구성 및 조사계획 수립, 조사·검사지원 준비 실태 보고(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수산 분야>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관련 시·도에 대응방향 지시
- 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 및 조사·검사지원 준비(주관 : 어촌양식정책과,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위기상황 접수			
	보고/전파			
	자체대책회의 개최			
초동조치	사건상황 모니터링			
	사고상황 전파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체계 점검·운영			
대응조치	긴급대응반 설치			
	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			
	해역 방사능오염 조사			
	수산물안전성 조사 지원·체계 가동			
후속조치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사고후 영향조사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해양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원회 발령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li> <li>사고 상황 및 대응 조치, 오염 확산 여부 등 사고상황 모니터링</li> <li>긴급대응반 구성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li> </ul>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주의) 상황 공유</li> <li>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 협조체계 유지</li> </ul>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 위기경보(주의) 상황 공유</li> </ul>
해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시행</li> <li>선박 운항감시체계 가동</li> </u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 방사능조사·검사 지원(필요시)</li> </ul>
여수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수지방해상수산청, YGPA,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li> <li>방사능검사 지원·협조체계 유지 및 검사 지원</li> </ul>

## 2 발생상황 II

### 가. 상황(수산분야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수산물 오염 예상
-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로 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검출 확인
-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수산물의 유통 우려, 심각(Orange) 단계

### 나. 조치사항 및 절차

입수정보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국내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우려
조치사항	세부내용
1. 상황접수	①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 오염상황 정보 입수
2. 상황보고	① 정보입수 부서에서 담당부서로 정보전파 ② 담당부서에서 정보 확인 후 상황보고 - 국내산 수산물 등에 대한 위해도 안전성 조사 및 해외정보 추가 수집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 해양수산부 → 장관 → 유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식약처 등) → 대통령비서실
3. 상황판단	① 긴급 위생조치 여부 및 대응 수준 결정 (해양수산부 주관) -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긴급조치 범위설정
4. 안전성 조사 강화 조치	① 국내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 방사능 오염 물질 등의 역학조사 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참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li> <li>③ 저장물량·입고내역 및 최근 생산물량 조사</li> <li>④ 해당제품 정밀검사·수거검사 실시</li> </ul>
5.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일지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li> <li>② 유관기관(시·도) 통보 및 언론홍보</li> </ul>
<b>상황발생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b>	
6. 안전성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li> <li>② 기준치 초과 수산물에 대한 출하중단 및 폐기</li> </ul>
7.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식약처, 보건복지부, 관련단체·협회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li> <li>② 보도자료 작성</li> </ul>
<b>상황발전 :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 방사능 오염</b>	
8. 상황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거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 (식약처 협조 요청)</li> </ul>
9. 확산범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의 유통경로 추적조사</li> <li>② 해당 생산·저장·거래 전단계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소 등 생산량 파악</li> </ul>
10.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양수산부 사고대책본부(수산반)로 상황보고</li> <li>* 사고대책 상황실 미구성 시 담당부서(어촌양식정책과)로 보고</li> </ul>
11. 대응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제품 회수계획 등 대응계획 수립</li> </ul>
12.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TV, 인터넷 등 위해사고 대국민 홍보</li> <li>② 유관부처·기관 통보</li> </ul>
13. 공동대응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범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단 구성</li> </ul>
14. 유통지도반 확대 운영 (식약처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국 시·군·구로 유통지도반 확대편성 및 운영</li> <li>②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증원편성</li> <li>③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li> </ul>

15. 긴급위생조치 결과보고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유출방지 등) 실시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 보고 (시·도 → 해양수산부) - 긴급위생조치관련 문제점 등 보고(해양수산부)
16. 긴급위생 조치에 대한 마무리	① 방사능 누출 국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협의 및 해당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 반송협조 촉구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③ 긴급위생조치 정리 또는 평가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등 개최
<b>상황종료 :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상황해제</b>	
17. 해제여부 검토	① 상대국 제출자료(검출원인·제발방지대책 등) 검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 자료 제출
18. 해제통보	① 해양수산부 사용(출하)금지 등 해제조치 통보

####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단체)
<b>① 상황발생</b>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③ 상황판단(긴급대처 상황인지 판단)		
<b>② 긴급조치</b>		
① 안전성조사강화 조치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① 자발적 회수	① 회수조치 점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식약처)
② 생산 및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시·도)	② 강제회수조치 및 점검	② 압류·폐기협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식약처)
③ 생산중단권고(해양수산부		

<p>/시·도) 및 점검(시·도)</p> <p>④ 강제폐기조치(해양수산부/시·도) 및 점검(시·도)</p> <p>⑤ 출하 전 수산물의 유통·판매금지 조치(해양수산부, 시·도)</p> <p>⑥ 압류·폐기조치(시·도)</p>	<p>③ 생산·출하금지 조치</p> <p>④ 압류·폐기조치</p> <p>⑤ 생산자 등 행정처분</p>	<p>③ 반송협조</p>
<p>③ 방사능 누출사고해역 수출국에 대한조치</p>		
<p>① 정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해양수산부)</p> <p>② 문제사항시 항의서한 발송(해양수산부)</p> <p>③ 재발방지대책 협의(해양수산부)</p>	<p>① 필요시 긴급조치반편성</p>	<p>① 정보사항확인협조(외교부)</p> <p>② 현지조사협조(외교부)</p>
<p>④ 협의회/심의회 개최</p>		
<p>① 전문가협의회 개최(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p> <p>②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 위생심의회개최(해양수산부)</p> <p>③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 위생심의분과위 개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p> <p>④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요청(해수부→원안위)</p>		<p>① 전문가협의회협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식약처)</p> <p>② 중앙사고수습본부개최요청(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p>
<p>⑤ 대국민홍보</p>		
<p>① 보도 설명 자료작성(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p>	<p>① 홍보자료 배포</p>	<p>① 홍보자료 배포(협조)</p>

<p>품질관리원)</p> <p>② 필요시 소비자 등 홍보자료 작성(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p>		
<p>⑥ 기타 사항</p>		
<p>①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p> <p>② 상황일지 작성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시·도)</p> <p>③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시·도)</p>	<p>① 통계자료 보고</p> <p>② 필요시 상황일지 작성</p> <p>③ 필요시 긴급조치반 편성</p>	<p>① 통계자료협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식약처, 관세청)</p>



## VI.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원전안전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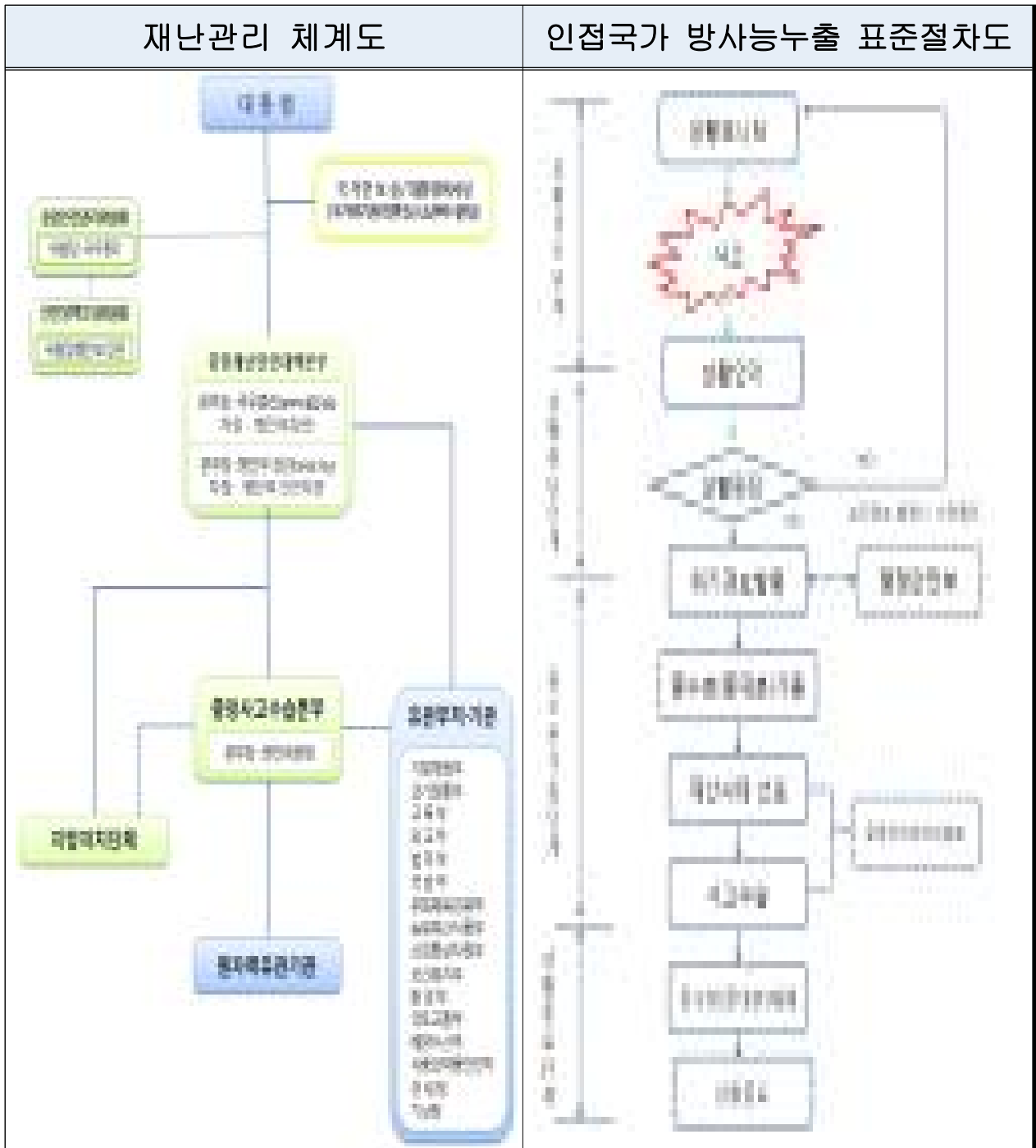
관리번호 :

관련 매뉴얼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원안위

○ 「인접국가방사능유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원안위, 행정안전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식약처,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2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 분	상황관리 단계	상황판단 및 재난대응 단계	수 습 복 구 단 계
초기 대응 부서	<b>종합 상황실</b> <b>사고접수,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장소, 사고내용, 원인, 피해현황, 오염여부, 현장 응급조치 상황 등</li> <li>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 인터넷 등 이용</li> </ul> </li> <li>위기경보 접수·전파</li> <li>내부 및 관계기관 상황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차관, 관련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등</li> </ul> </li> </ul>	<b>상황파악 및 보고·전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물적 피해 등 상황 파악·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군,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li> </ul> </li> <li>중앙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 정보 수집 및 우리부 조치상황 보고·전파</li> </ul> </li> <li>내부 상황전파·보고</li> </ul>	<b>사고접수,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및 복구 상황정보 수집·전파</li> <li>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li> </ul>
	<b>재난대응 소관부서</b>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산업기술과 등)	<b>초기 상황보고 및 초동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담당자 소집 및 긴급 대응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안위 사고대책본부 인원 파견(요청시)</li> </ul> </li> <li>현장 대응상황 파악</li> <li>사고대책본부 설치 필요성 검토</li> <li>위기경보 접수·전파</li> </ul>	<b>사고대응 조직 구성·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여부 결정</li> <li>사고대응조직 구성 및 대응태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근무요원 편성·운영</li> <li>관계기관(원안위, 해경, 지방청 등)간 핫라인 유지</li> </ul> </li> <li>가용 인력·장비 현황 점검·확인</li> </ul> <b>분야별 사고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안위의 해양방사능 조사 지원(국립수산과학원) 및 연안해역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해양환경공단)</li> <li>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출하관리(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li> <li>항만 입출항 선박(평형수 포함)·화물·인원 방사능 오염 조사 지원(항만운영, 해사산업기술과)</li> <li>해양경찰청의 오염우심선박 항만 입출항 통제 지원(항만정책과)</li> <li>사고해역 인근 통항선박 정보 제공(해사안전관리과)</li> </ul> </li> </ul>
장·차관	<b>초기 상황판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상황 확인(보고 :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li> <li>유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과 유선통화 등 추가 상황파악</li> </ul> </li> <li>(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체계 확립</li> <li>수산물 안전성 및 선박 안전 대책 등</li> </ul> </li> </ul>	<b>상황판단 및 대응 총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판단회의 주제 및 상황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수부 대응방향 및 대응수위 결정</li> </ul> </li> <li>사고대책본부 지휘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부적 대응 필요사항 검토·지원</li> <li>국내 영향 현황 파악 및 분야별 대응상황 점검</li> </ul> </li> <li>(필요시) 주요 대응현장 방문 및 현장 대응상황 점검</li> </ul>	<b>사후관리 대책 점검 및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 영향평가 및 재난복구 협력 총괄 지휘</li> <li>사고대책본부 해체 결정</li> <li>(필요시)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li> <li>VIP, 총리께 상황보고, 현장방문 시 수행</li> <li>중앙안전관리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참석</li> <li>피해조사 및 보상방안 마련</li> </ul>
담당 실·국장	<b>초기 상황판단 및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li> <li>분야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해군,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등에 긴급조치 협조 요청</li> </ul> </li> </ul>	<b>분야별 상황판단 및 대응 총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실·국 사고수습체계 지휘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분야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조치 총괄</li> <li>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주관(담당분야)</li> <li>유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li> </ul> </li> <li>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장·차관 보고</li> </ul>	<b>분야별 피해조사·보상 등 사후관리 총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종료 판단 및 대응단계 조정, 대책본부 해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대책본부와 사전 협의</li> </ul> </li> <li>장·차관 사고현장 방문시 수행</li> <li>분야별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 수립 총괄</li> </ul>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보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인터넷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li> </ul> </li> <li>언론사 및 기자 명단 확인</li> <li>재난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과 협조하여 운영</li> </ul> </li> <li>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구성</li> <li>사고대책본부 보도자료 배포(필요시) 및 브리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과 사전 협의</li> </ul> </li> <li>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차관 현장 인터뷰 준비</li> <li>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과 사전 협의</li> </ul> </li> <li>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li> </ul>

### 3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 부서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⑥ 재난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주관부서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연안해운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관리과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연계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환경공단 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환경공단, 해양경찰청, 환경부 등
주요 업무	<p>&lt;재난상황 관리 총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li> <li>○ 관계부처, 지방청 등 비상연락망 유지</li> <li>○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li> <li>○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총괄</li> <li>○ 위기경보 발령·전파 및 경보단계 조정 또는 해제</li> <li>○ 원안위의 사고대책본부 인원 파견 (필요시) 및 상황관리 근무조 편성</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을 위한 민관군 장비·인력 등 재난대응 자원관리 총괄·배분</li> <li>- 조사 및 주민 대피·이동용 선박</li> <li>- 방사능 측정 인력·장비</li> </ul>	<p>&lt;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선박운항상황 파악</li> <li>○ 항행안전 경보방송 실시</li> <li>○ 국민안전처의 방사능 오염 의심 선박 항만 입출항 통제 지원</li> <li>○ 항만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 요청·지원</li> </ul>	<p>&lt;재난현장 방사능 오염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등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해양방사능 오염 조사 지원(시료채취)</li> <li>○ 항만 입출항 선박(평형수 포함)·화물·인원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요청·지원</li> <li>○ 연안해역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li> <li>○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및 필요시 출하 제한 조치</li> </ul>

## 4 여수청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⑥ 재난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주관부서	매뉴얼 주관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지원 부서 (어항건설과)	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	선원해사안전과	운영지원과
연계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여수지사)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 YGPA	여수지방해양경찰서	
주요 업무	<p>&lt;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위기대응상황 종합보고</li> <li>○ 각 반별 활동 및 조치사항 정리·보고</li> <li>○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출하금지조치</li> <li>○ 해양방사능오염 조사 지원</li> <li>○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안전성 장기모니터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li> <li>○ 원안위의 방사능 조사 지원(시료채취 : 국립수산과학원)</li> <li>○ 주요 연안해역 방사성 물질 장기 모니터링 : 환경공단(여수지사)</li> </ul>	<p>&lt;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 운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분야 단계별 조치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만시설 방호조치 및 선박·승객·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활동 지원</li> <li>- 오염선박 항만 입출항 관리 지원</li> </ul> </li> </ul>	<p>&lt;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총괄</li> <li>○ 선박 관련 분야 단계별 조치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해역 주변 선박 운항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 행동요령 전파</li> <li>- 오염해역 항행 선박의 선박 평형수 검사</li> </ul> </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자재 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li> <li>○ 긴급인력·장비 수송을 위한 선박·장비 지원</li> <li>○ 사고대응 소요 인력 및 기자재 지원</li> </ul>

\* 연계 유관기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5 해양수산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재난 관계기관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예방·대비 단계	대응 단계	수습·복구 단계
해양수산부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접수·전파</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접수·전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li> <li>· 수산물 안전성 확인 및 필요시 출하금지 조치</li> <li>· 오염해역 조업금지 조치</li> <li>· 원안위에 방사능 오염 조사 요청·지원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 검토·지원</li> <li>· 사후 환경모니터링 총괄</li> </ul>
지방해양 수 산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국가 운항 선박 현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해역 운항금지 등 안전조치 및 행동요령 홍보</li> <li>· 해양경찰청의 오염우심선박 항만 입출항 관리 지원</li> <li>· 사고해역 출항·기항 선박의 인원, 화물, 선박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요청·지원</li> <li>·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요청·지원(대상선박 확인, 시료채취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및 양식장 피해조사 지원</li> </ul>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조사체계 구축(장비, 인력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 및 안전성 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및 안전성 장기 모니터링</li> </ul>
국립수산 과 학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방사능 조사 지원(시료채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방사능 조사 지원(시료채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의 방사능 조사 지원(시료채취)</li> </ul>
해양환경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해역 방사능 오염 정기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방사능 오염 여부 조사 지원 및 사고 영향 검토,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조사</li> <li>·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연안해역 방사성 물질 장기 모니터링</li> </ul>

## 6 방사능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 □ 해양수산부

부 서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해양환경정책과(총괄,환경)	044-200-5293, 5287	044-200-5299
해사안전관리과(선박)	044-200-5857	044-200-5869
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22	044-200-5629
항만운영과(항만통제)	044-200-5737	044-200-5789
해사산업기술과(평형수)	044-200-5834	044-200-5849
종합상황실	044-200-5895~6	044-200-5886

### □ 방사능재난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비 고
방사선방재국	국장	02-397-7320	
방재환경과	과장	02-397-7351	
방재환경과	서기관	02-397-7358	

#### ○ 관련기관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5	044-200-236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24	044-200-2225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실	044-205-1540~3	044-205-8894,8890
	환경재난대응과	044-205-6176	044-205-8947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 환경과	02-397-7351,7358	02-397-7362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1	044-215-8193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7	02-2100-8498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2	02-2100-7995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2	02-2110-0327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8	02-748-5778
	합참 화생방과	02-748-3284	02-796-0369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044-203-2920	044-203-3483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2	044-868-921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92	044-200-529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710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2,0493	02-847-4419
소방청	119 구급과	044-205-7634	044-205-8711
	119 구조과	044-205-7621	044-205-898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5, 7126	044-201-7130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7	044-203-476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7	044-201-5628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	042-481-7829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실	042-861-4041(주간)	042-868-0406
		042-868-0000(야간)	042-861-1700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02-3399-5959 02-3399-5811~9	02-3399-5830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관(해양수산부 소속·산하)

기 관 명		소관부서	연락처
지방 해양 수산청 (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5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5-981-514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2-228-56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4-245-1536
항만공사 (4)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9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32-890-0721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61-797-4480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052-228-5435



□ 유관기관 연락처

《 항만 · 선박 분야 》

□ 해양수산부

반 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
항만물류반	항만운영과	044-200-5773	044-200-5789
	해운정책과	044-200-5727	044-200-5729
	선원정책과	044-200-5746	044-200-5749
선박반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044-200-5849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	044-200-5869

□ 소속 · 산하기관

기관명	관련 부서	전화번호	팩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1-609-6445	051-609-64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2-880-6216	032-884-356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	061-654-207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5-981-5142	055-242-057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2-228-5600	052-228-556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3-520-6172	033-520-616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3-467-6136	063-467-90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280-1667	061-280-166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4-245-1536	054-245-159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35	031-680-723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41-660-7653	041-663-0348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 항만정책부	051-999-3123	051-999-3296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항만관리팀	032-890-8249	032-726-0317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 항만운영안전팀	052-228-5438	052-228-5449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61-797-4482	061-797-4494

## 《 해양환경 분야 》

### □ 해양수산부

반 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
총괄상황반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8	044-200-5299

### □ 소속 · 산하기관

기관명	관련부서	전화번호	팩스
해양환경 공단	해양수질팀 (지원:방제대응팀)	051-400-7911(주) 02-3498-8601(야)	051-400-7930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센터	051-400-7937	051-400-7920
	부산지사	051-466-3914	051-466-3915
	인천지사	032-884-7702	032-884-7703
	여수지사	061-654-6431	061-654-6430
	울산지사	052-261-3413	052-260-8909
	대산지사	041-664-9101	041-664-9104
	마산지사	055-223-8833	055-244-4229
	동해지사	033-531-4056	033-532-3559
	군산지사	063-443-4813	063-443-4816
	포항지사	054-273-5595	054-273-6657
	평택지사	031-683-7973	031-683-7901
	목포지사	061-242-9663	061-242-9665
	제주지사	064-753-4396	064-753-4375

## 《 수산 분야 》

### □ 해양수산부

반 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
수산반	어촌양식 정책과	044-200-5622(주) 044-200-6900(야)	044-200-5629

### □ 소속기관

기관명	관련 부서	전화번호	팩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 연구과	051-720-2221(주·야)	051-720-2266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81(주) 051-400-5601(야)	051-400-5788
부산지원	”	051-602-6001(주·야)	051-602-6088
인천지원	”	032-880-6065(주·야)	032-881-6051
인천공항지원	”	032-740-2992(주) 032-740-2981(야)	032-740-2995
서울지원	”	02-2660-9600(주·야)	02-2660-9601
평택지원	”	031-8053-7712(주·야)	031-8053-7716
장항지원	”	041-956-0028(주·야)	041-956-3961
목포지원	”	061-285-2821(주·야)	061-285-2824
완도지원	”	061-550-0671(주·야)	061-554-1147
여수지원	”	061-655-0372(주·야)	061-655-0376
제주지원	”	064-728-6300(주·야)	064-728-6319
통영지원	”	055-645-2973(주·야)	055-645-0508
포항지원	”	054-231-0092(주·야)	054-231-0095
강릉지원	”	033-660-7276(주) 033-660-7200(야)	033-660-7250
전주지원	”	063-276-8528(주·야)	063-276-8529

## VII. 부록

# VI. 부록

## 1. 상황보고서

○○년 ○월 ○일, ○○:○○현재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팩스	

<b>제목 :</b>	<b>배부처</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개 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수시간/출처 :</li> <li>2. 사고내용</li> <li>3. 현장 조치사항</li> <li>4. 우리부 조치사항</li> <li>5.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중간·최종보고서에 작성)</li> <li>6.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동향, 여론, 기타</li> </ul> </li> </ol>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국장	
	○○담당	
	청와대상황실	
	국가안보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부	
	○○부	
	○○부	
	○○청	
○○청		

## 2.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보고서

위 기 명				
발생 일시		평가 일시		
위기평가회의 위원회 구성원				
위기 평가결과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보고/통보기관	<p>보고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p> <p>통보 : 행정안전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의학원 등</p>			
<p>1. 관련 상황/정보</p> <p>2. 분석/판단</p> <p>3. 결과(조치사항)</p>				
담당부서	부서 : 전화번호 :		성명 : 전자우편 :	

### 3. 위기상황 전파체계

#### ①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예규)

####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 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 발송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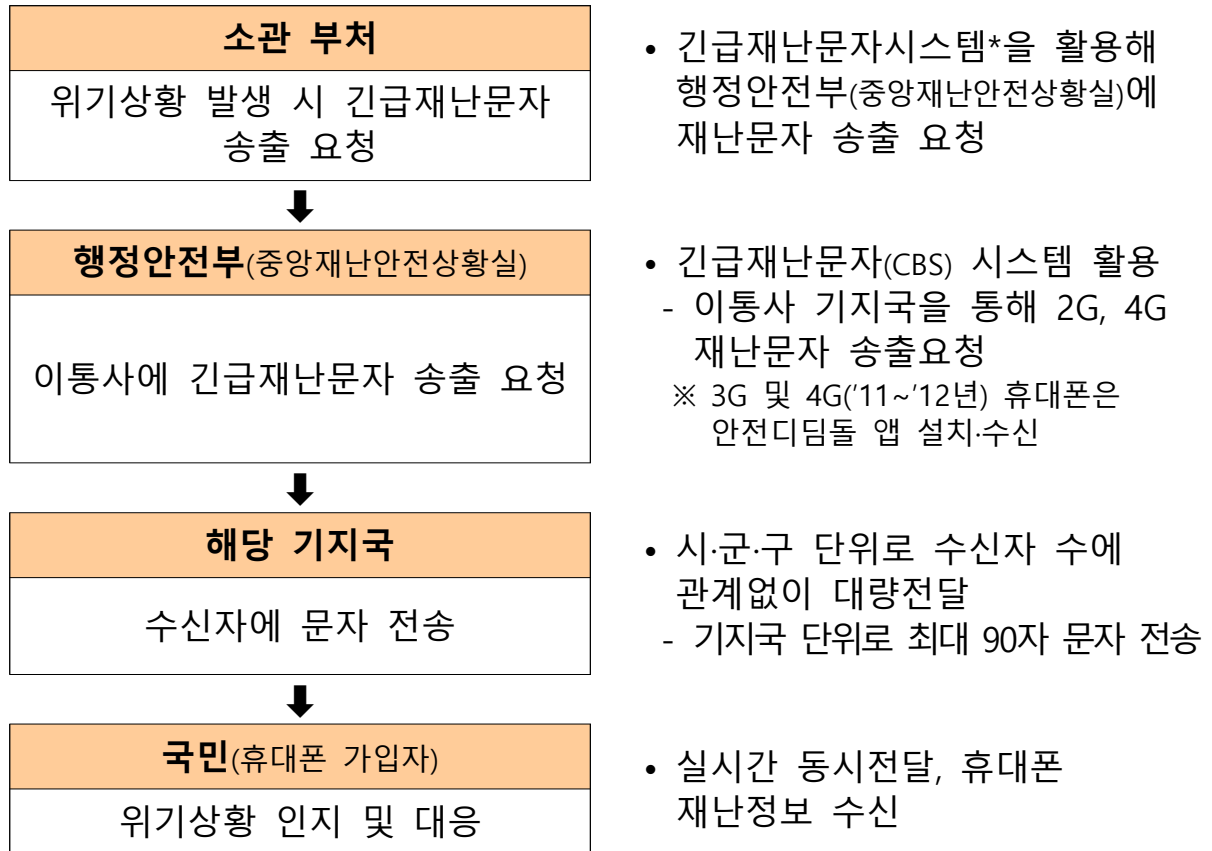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 □ 표준문안 예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4G폰	[원자력안전위원회]오늘 ○○국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 물질 국내 유입 예상되니 외출 및 야외 활동 자제, TV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확인 바랍니다.
	2G폰	[원자력안전위원회]오늘 ○○에서 원자력 사고 발생. 방사능 물질 국내 유입 예상되니 외출 자제, TV 등에서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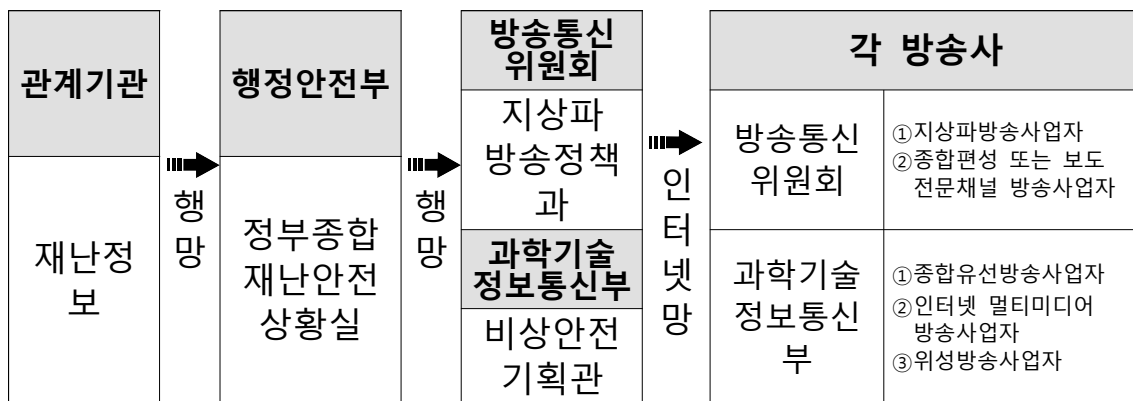


##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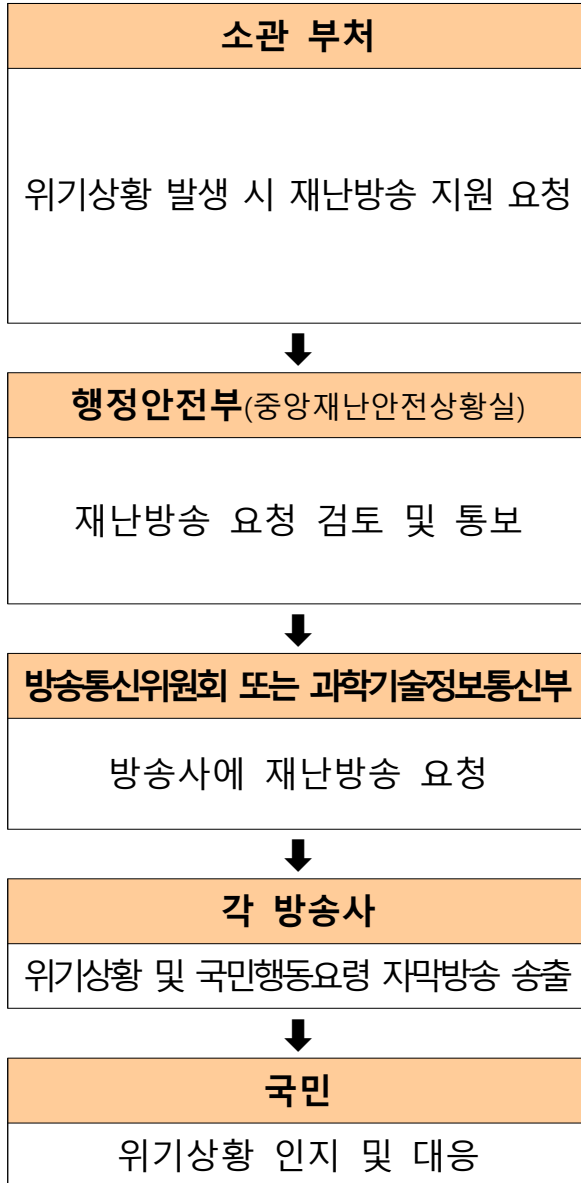
###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 방송 표출 요청 가능



-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 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 발송절차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 3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울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발령 사유, 경보의 종류, 울림일시, 울림지역, 경보요청자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 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발령 지시
  -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18. 10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 시스템 개념도



## □ 메시지 작성 화면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http://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

### (2) 기본 원칙

- 신속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3)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li> <li>○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li> <li>○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li> <li>○ 온, 오프라인 위기 징후 파악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li> </ul>
위기(crisis)	위기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비상체제 가부 결정</li> <li>-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 본부 설치 여부 결정</li> <li>- 응급임무 부여/비상근무 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론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연락</li> <li>-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li> <li>- 보도자료 배포</li> </ul> </li> </ul>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위기진행	○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위기 후 (post-crisis)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결과 브리핑		
	○ 위기 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여론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회복 프로그램	- 상황관련 개선방안 - 내부조직원 결속프로그램 - 대외공중 회복프로그램 - 언론사 및 주요 공중, 관계자에 감사서신 발송	

#### (4)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 대변인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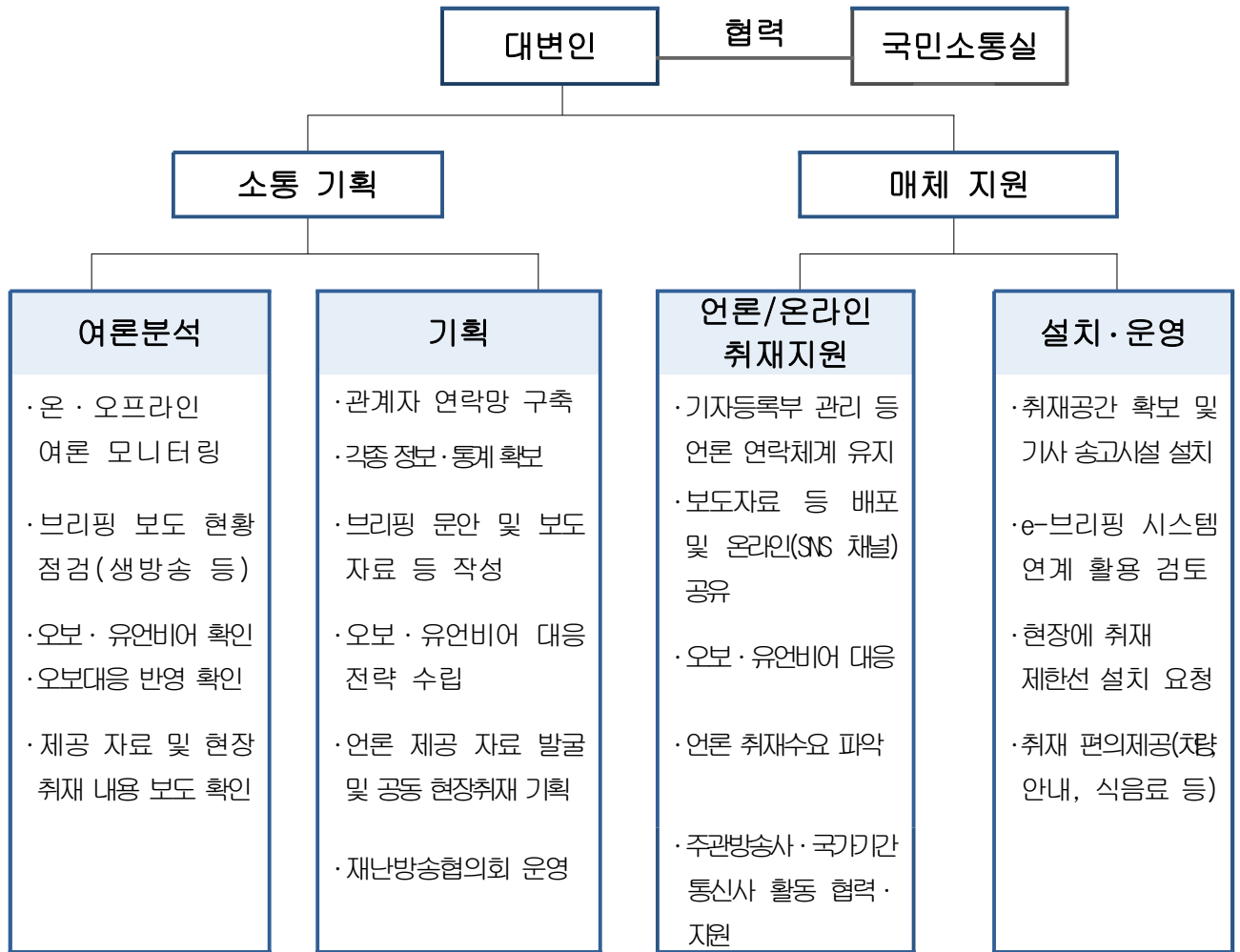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고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둬.

##### ○ 대변인 지위 ·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리 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열거나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 (소셜 미디어 여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 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유사 및 거짓 정보 등을 적시에 발견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초기 해명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 발표 시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재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히 메시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6)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엇대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 (취재지원팀의 배치)

####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템플릿

###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겟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li> <li>- 인구통계적 특성</li> <li>- 피해규모(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사실 전달</li> <li>- 집회/연설 등</li> <li>- 현재 상황 설명</li> <li>- 루머대응</li> <li>- 미디어 응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보도자료</li> <li>- 홈페이지 게재</li> <li>-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li> <li>- 라디오</li> <li>- 소셜미디어</li> <li>- 기타(전화 응대 등)</li> </ul>

###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p style="text-align: center;"><b>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li> <li>-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li> <li>-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li> <li>-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ul> </li> <li>○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li> <li>- 사과 및 책임감 표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li> <li>- 관계 개선 노력</li> <li>- 이미지 개선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li> <li>-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li> <li>-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li> <li>-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li> </ul> </li> <li>○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li> <li>○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형 소통 방안</li> <li>-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인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li> <li>-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li> <li>-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li> <li>-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li> </ul> </li> <li>○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li> </ul>

## 5.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별표4)

○ 대피·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의 결정기준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대 피	10mSv
소 개	50mSv
갑상선방호약품배포	100mGy
일 시 이 주	30mSv/처음 1개월, 10mSv/그 다음 1개월
영 구 정 착	1Sv/평생

○ 음식물 섭취 제한 기준

방사성 핵종		육류 어류 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 식품 (Bq/kg)
1군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2,000	1,000	200	100
2군	I-131, Sr-90	1,000	500	100	10
3군	U-235, U-238	100	100	20	10
4군	Am-241, Pu-238, Pu-239, Pu-240, Pu-242	10	10	10	1
5군	H-3			100kBq/l	

## <참고> 방사선량과 단위

☞ 방사선량이란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물리량

### □ 단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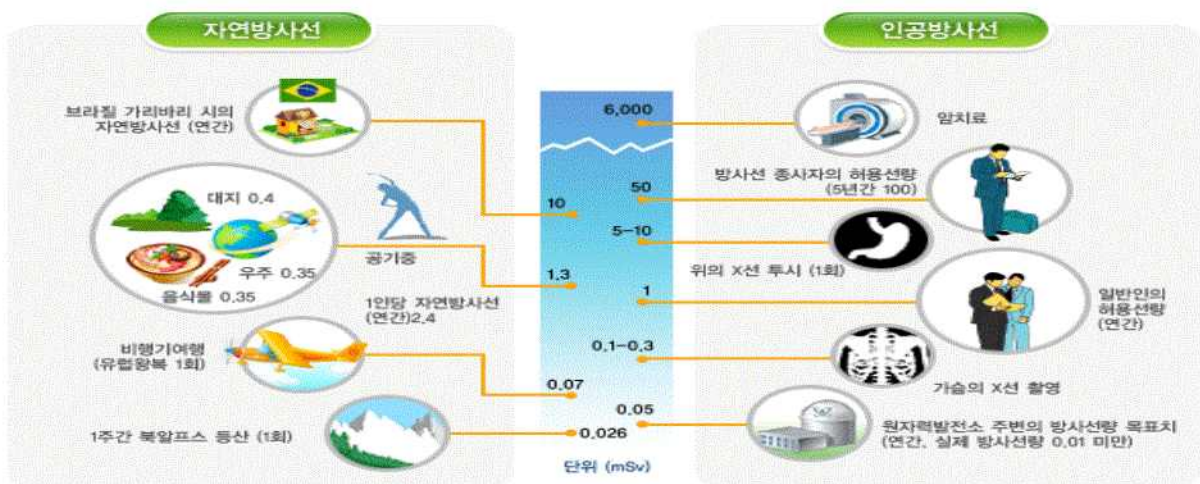
선량명	구단위	신단위	정의	대상
방사능	퀴리(Ci)	베크렐(Bq)	방사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 / 1Ci = 37GBq	물질
조사선량	렌트켄(R)	쿨롱/킬로그램(C/kg)	γ(X)선이 공기중에 얼마만큼의 세기로 나오는가	공기
흡수선량	라드(rad)	그레이(Gy, J/kg)	방사선에 피폭되는 단위질량당 흡수되는 방사선의 에너지	사물(물질)
등가선량	렘(rem)	시버트(Sv, J/kg)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인체
유효선량			등가선량에 조직가중치(WT)를 곱한것	인체

### □ 단위의 환산

- 국내 자연방사선 준위 : 0.1~0.2 μSv/h
- 1Sv = 103mSv = 106 μSv = 109nSv
- 1nSv = 10-9Sv
- 1 μSv = 10-6Sv
- 1mSv = 10-3Sv



### □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자료 출처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6. 원전 사고·고장 등급에 따른 사고 분류 및 분석

분류	등급	분 류 기 준	발생 사례
사 고	7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	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
	6	방사선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5	방사선비상 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 * 원자로 노심의 심한 손상	미국 TMI 원전 노심용융사고 ('79)
	4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 원자로 노심의 일부손상 또는 종사자의 치사량 피폭사고	일본 JCO 임계사고('99)
고 장	3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 발전소내의 중대한 방사능 오염확산 또는 종사자의 급성 방사선 장애, 사건 * 사고로 확대가능한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스페인 반데로스 원전 화재 ('89)
	2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 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 연간 제한치 이상의 종사자 과피폭 또는 오염확산 사건 * 사고로 확대 가능성이 없는 안전계통의 중요 고장	프랑스 시보 원전 냉각재 누설('98)
	1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상 상태	경미한 고장
	0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 7. 국외 사고사례

사고사례	주요 내용	비고
<p>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 * 사고 7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지된 터빈을 시험하다 원자로 폭발</li> <li>○ 방사성 물질 10여일 동안 유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도 방사능 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사망자 31명, 4년후 300여명 정도로 발표</li> <li>○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 거주 13만여명 이주</li> </ul>
<p>미국 TMI 원전 노심 용융사고('79) * 사고 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운전중 2차측 급수상실로 1차측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상승</li> <li>○ 1차냉각재가 상실되어 핵연료 용융 사고 발생</li> <li>* 기계적인 문제와 인적실수가 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밖 주민 피폭</li> <li>○ 제염작업 등 복구비 12억불 소요</li> <li>○ 발전소 영구 폐쇄</li> </ul>
<p>일본 JCO 임계 사고('99) * 사고 4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가공공장에서 고속증식로 공급 우라늄 변환작업 중 임계사고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작업자 3명 중대한 방사선 피폭</li> <li>○ 49명 경미한 피폭</li> </ul>
<p>스페인 반데로스 원전 화재('89) * 고장 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빈발전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전기 계통의 수소가 윤활유와 함께 누설 되면서 화재 발생</li> <li>○ 6시간동안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미누설</li> </ul>
<p>프랑스 시보 원전냉각재 누설('98) * 고장 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시운전 시험완료후 냉각단계에서 잔열제거계통 유량제어밸브 후단 부위에서 배관관통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재 누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미누설</li> </ul>
<p>일본 후쿠시마 원전 노심용융 사고('11) * 사고 7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북지방 미야기현 동쪽 해저에서 9.0 지진 발생 → 초대형 쓰나미 발생</li> <li>○ 지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외부전원 공급 실패(수전철탑 붕괴, 비상디젤침수)</li> <li>○ 연료봉 피복재 용융 및 1~4호기 수소폭발, 노심 용융, 원자로용기 외부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피해 및 환경손상 등 피해규모 미확정 - '13.4.까지 2조 500억엔 손해배상</li> </ul>

## 8.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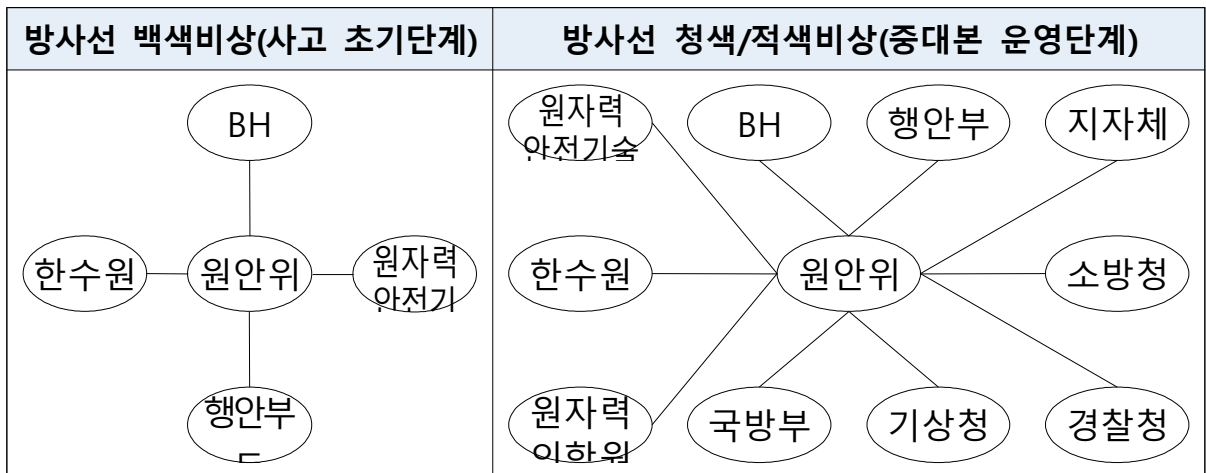
### □ 개 요

- (목적)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18부</li> <li>•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li> </ul>
지자체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li> <li>*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li> </ul>
재난관리 책임기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li> </ul>

###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안위(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등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석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 예 :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지역·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9. 원자력시설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방사선은 가능한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방사선피폭을 예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권고됩니다.

즉, 환경방사선 측정수치가 높아 정부의 국민 보호조치 발표가 있을 경우, 황사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과 같이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며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 등입니다.

황사 농도가 짙더라도 짙은 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요령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행동요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방사능구름 통과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 대응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의 섭취금지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음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

## ■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는 것은 금물
  - 라디오, TV,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한 정부지시를 신뢰하여 행동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 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
  -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조치 실시
  
- 옥내대피 및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및 가스, 환기설비 등을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소개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 금지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 금지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외 접근금지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지시에 따라 행동
- 대응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 금지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 10. 인접국 원전 운영 현황

국가명	운전	정지	건설	합계	폐로
중국	46	0	11	57	0
일본	42	0	2	44	18
인도	22	0	7	29	0
대만	4	0	2	6	2
파키스탄	5	0	2	7	0
방글라데시	0	0	2	2	0

※ 자료출처 : IAEA PRIS 참조 ('18.11.7)

# 11.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공유 체계

## □ 목 적

- 주관기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 국 대사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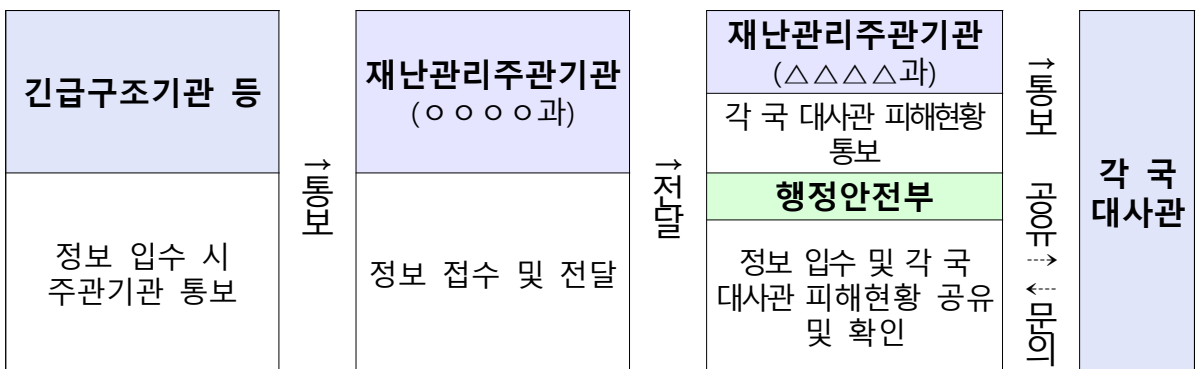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 내의 영사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 통보내용

-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 통보절차 및 역할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소관 재난에 의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및 전달
    - \*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재난안전법 제18조제5항)
  - (해양환경정책과) 각 국 대사관에 피해 현황 통보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그 정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국 대사관과 외국인 피해현황 공유 및 확인



□ 사건 통보 예시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전화(Telephone) : 000

팩스(Fax) : 000

수신(To) : 000 대사관

제목(Subject) : 사고사실 통보(Accident Notification)

### 1. 대상자(Personal Details)

성명(Name) : 000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0000

국적(Nationality) : 000

###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2000.00.00. 00:00경

발생장소 : 00-00.00N 000-00.00E(000도 남방 00 해리)

###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2000. 00. 00. 00:00경 유조선 우진호 유류유출사고에서 유출된 기름이 00군 해수욕장에 부착되어 다량의 기름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후 신고

### 4. 해경 조치(Actions taken by the coast guard)

- 위 대상자는 00병원 후송, 호흡곤란 증세 외 건강상태 양호함

사무관(Senior Deputy Director)

000

## 소관 부서

### 여수광양항만공사

연락처	재난안전실	전화	061-797-4480
		FAX	061-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